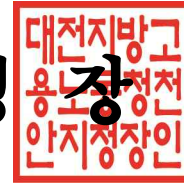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처분 결정 통지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06. 15.

천안고용노동지청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취업성공수당 환수 결정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7조, 같은법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 제29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같은법 제15조제3항, 같은법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1	최O석	73.08.10.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머리길 ***, ***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및 취업성공수당 환수 안내	- 취업성공수당 지급 결정 취소 - 취업성공수당 반환명령 -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	- 의견제출 등기 반송 - 부정수급 처분 등기 반송 (송달불가: 폐문 부재사유)

4. 공고기간: 2026. 06. 15. ~ 2026. 06.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천안고용노동지청 아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소연(Tel. 041-570-55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